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청소년안전망 구축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우대 및 건강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청소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다.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립·은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청소년의 권리보장, 비밀누설 금지, 민간단체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7.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조(청소년의 우대) ① 시장은 시가 운영하거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시설, 감면율 및 감면 절차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며, 개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의 건강보장)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질병 예방, 정신건강 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흡연·음주 및 마약 예방 관련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지원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퇴소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복지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퇴소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그 밖에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퇴소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퇴소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9조(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지원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상담, 건강검진, 기초생활 및 자립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퇴소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소청소년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6조(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시장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사업
3.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8조의6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권리보장)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하거나 시장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거나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